

## 각종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사건시 피해보상에 따른 임상 수의사의 대처방안

최근 우리 축산농가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도로 및 우회도로 확장 및 신설, 석산의 채석장, 아파트, 골프장 건설현장 등에서 각종 건설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발파, 절토 및 성토부 다짐 공사 등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가축피해에 따른 분쟁조정신청과 법원의 소송 건수가 부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도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주위에 이러한 소음·진동·먼지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농가들이 환경분쟁에 따른 관련 지식과 정보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보상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이에 필자는 직접 각종 법원소송 사건, 사실조회서 작성과 중앙과 각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전문가로 위촉을 받아 현지조사를 해 오면서 피해보상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열거해나가면서 동물병원 개설 임상수의사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저 본고를 정리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 1. 환경분쟁 피해 보상시 임상 수의사의 대처방안

-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항목 인지 및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피해 농가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의 인지를 모르고 지나치거나 어떤 피해(항목)가 발생하였는 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 피해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유·조·사산, 도태, 번식효율저하, 우유생산량 감소, 육질저하, 성장지연, 자돈 압·폐사, 산자수 감소, 폐사, 질병 발생 등의 가축피해보상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가축의 구입, 인공수정 및 번식성적, 사료구입 등과 수의사 진단서, 소견서 및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의 제반기록이 있어야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 즉, 다시 말해서 공사장에서 소음·진동·먼지 등에 따른 가축피해를 보았다는 것이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어야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 피해농가가 사건보상의 신청시에 피해항목의 누락이나 보상금액의 과소청구로 인한 적절한



**류 일 선**  
수의신과학박사  
국립축산과학원 수의연구관  
Irisryu@korea.kr



피해보상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자문을 해줘야 한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진단서 등의 발급시 각종 공사장의 환경분쟁과 인과관계의 성립여부를 판단한 후, 자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농가가 임상 수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및 유려엽사산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피해의 인과관계를 파악한 후에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발급시 각종 공사장의 환경분쟁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병명, 증상, 예후 소견 등을 적시해놓은 경우가 많은 바, 피해의 연관성이 있을 시에만 발급을 해줘야 한다.
  - 어떤 경우에는 사건의 현지조사를 하다보면, 시공사 즉 피신청인측으로부터 신청인 즉 피해 농가가 막무가내식으로 요구를 하는 바람에 할 수없이 발급해주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본 전문가는 탄식을 금할 수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우리 임상수의사의 위신 저하와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진단서 등의 발급을 적극적으로 한다.
  - 각종 공사장의 환경분쟁시 임상수의사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농가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피해농가를 방문하여 왕진 등으로 피해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피해농가가 요구하는 진단서 등의 발급을 기피하는 임상수의사가 간혹 있는 바,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 환경분쟁 전문가 등이 요구하는 진단서 등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발급한 임상수의사가 책임부담을 전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어떤 예에서는 환경분쟁 전문가가 아닌 임상 수의사가 각종 법원의 피해나 소송사건 등에 직접적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 진단서, 소견서나 왕진비 등의 영수증을 신청인에게 반드시 발급해준다.
  - 피해 농가의 보상시 임상 수의사의 왕진비, 약품비 및 진단서 등의 발급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피해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발급해주어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다.

- 진단서, 검안서 및 각종 증명서 발급시에는 1매에 많은 두수를 한꺼번에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인정키가 지난함을 밝혀두며 반드시 1두 1매의 원칙을 준수한다.

### • 각종 공사장의 환경분쟁사건시 잘 모를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는다.

- 아직까지도 임상수의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관련분야 제반 지식이나 정보부족으로 인해, 각종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시 무성의하거나 관련성이 부족한 경우가 간혹 있다.
- 따라서 환경분쟁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수시로 받는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하여야 한다.

## 2. 환경분쟁시 가축피해항목 내역

### ■ 피해유형 I

- 유산, 조산, 사산 : 정상분만과 이유후(젖소:초유떼기, 한우:젖떼기 등) 출하시의 정상가격(자연발생분의 이상산 제외)
- 폐사 : 폐사당시의 연·월령, 산차, 생산능력 등을 고려 당시 정상가격(자연발생분 제외)
- 도태 : 도태당시 정상 생산 능력 보유축 가격과 도태 가격과의 차(자연발생분 제외)
- 번식장애 : 치료비용, 공태기 연장에 의한 소득감소분(자축손실, 유대감소 등, 자연발생분 제외)

### ■ 피해유형 II

- 소 : 성장지연, 유량감소, 유질·육질저하, 수태율 저하, 치료비증액 등
- 돼지 :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육질저하, 산자수 감소, 이유자돈수 감소, 출하돈수 감소, 출하 일령 증가
- 닭 : 성장지연, 산란율 감소, 이상란율 증가, 약품비 증가 등
- 개, 곰, 염소 :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산자수 감소 등
- 사슴 : 성장지연, 수태율저하, 녹용생산성 감소 등

## 2. 환경분쟁발생시 임상수의사의 각종 제 증명서 등 작성 요령 및 사례

피해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분쟁시 가축 피해에 있어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들을 항시 준비해두는 것이 피해 농가의 책무이나, 실제 본 전문가가 가축사육농장에 가서 피해 농가가 받아 놓은 진단서, 검안서나 기타 제 증명서를 보고서, 진단서 등의 내용이 OO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이 가축피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부된 내용이 부실하여 재차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밝혀두고 싶다.

따라서, 각종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임상 수의사들은 아래 주요한 증빙서류들에 대해 작성 요령 및 사례를 참고하여 보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다.

### • 진단서

하기 진단서내에 공란에 전부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OO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시는, 예시와 같이 반드시 OO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관계를 증상과 같이 예후소견란에 상세하게 기재해둘 것을 강조해두고 싶다.

### • 검안서

현지 실사시에 있어서 가축이 폐사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발급하는 검안서 역시, 상기와 같이 OO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가축 폐사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시에는, 예시와 같이 반드시 OO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피해관계를 주요 소견란에 상세하게 기재해둘 것을 강조해두고 싶다.

### • 유·조·사산 증명서

현재 (사)대한수의사회의 승인양식은 사산증명서가 있는 바, 유산시 유산증명서를, 조산시 조산 증명서를 변경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도 일부 임상 수의사들은 진단서 양식에 유산, 조산, 사산한 사실을 발부하는 예가 있어, 반드시 정해진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소견서

소견서는 특정한 양식이 없으며, 하기의 양식을 원용 및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26)

### 검안서(예시)

동물 소유자 (관리인)	성명		
	주소		
동물의 특징	종류	품종	이름
	연령	성별	모색
	기타		
발병 연월일			
폐사 일시			
폐사 장소			
검안 연월일			
임상 진단명			
폐사의 원인			
사체의 상태			
주요 소견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발생한 사체를 부검한 결과, (공사장의 인과관계 성립시 소음·진동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검 소견) 나타나, ○○공사장에 발생한 소음·진동 등 스트레스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 사후된(증거사진 첨부)		

「수의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물병원 명칭:

동물병원 주소:

(전화번호

)

수의사 면허번호: 제 호

수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26)

### 사(유·조)산 증명서(예시)

동물 소유자 (관리인)	성명	
	주소	
출산 동물 (모체)	종류	품종
	이름	연령
	특징	
사(유·조)산 동물	사(유·조)산 장소	
	사(유·조)산 일시	
	사(유·조)산 동물의 성별	
	신생 동물의 사(유·조)산 수	
	신생 동물의 출산 수	
	사(유·조)산 원인 :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개월령의 태아를 유(조·사)산한 것으로 사유됨(공사의 인과관계 성립시 소음·진동 스트레스와 관련된 상세한 소견 : 분양예정일, 최중수정일, 유·조·사산의 증상 등)(증거사진 첨부)	

「수의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물병원 명칭:

동물병원 주소:

(전화번호 )

수의사 면허번호: 제 호

수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소견서(예시)

동물 소유자 (관리인)	성명
	목장명
	주소
환경분쟁발생 이력	상기 목장은 00년 0월 부터 00ㄷ 사육한 목장으로 서, 00여m 이격거리에 위치하고 있 는 00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의 스트레스가 00년 0월 0일 00시경 발생하여 사육 가축이 놀라고, 한쪽으로 몰리는 등의 행동이 관찰되었으며, 사료 섭취량 감소, 유량감소 및 유산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후략
환경분쟁발생에 따른 가축피해에 따른 조치 및 피해 세부내역	00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상기 목장주 000의 가축 피해연 락을 받고 00년 0월 0일, 양진하여 그 피해발생 원인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사육 가축등 이 놀라 식욕부진, 유량감소, 유산 0두, 유방염 0두, 폐사 0두, 번식장애 0두 등이 발생하였 는 바, 이는 00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하기와 같이 피해가 발 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피해 세부 내역 : - 조치 세부 내역 : -후략

상기와 같이 소견서를 발부합니다.

년            월            일

동물병원 명칭:

동물병원 주소:

수의사 면허번호: 제            호

(전화번호

수의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상과 같이 각종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따른 임상 수의사들의 대처방안 및 진  
단서, 검안서나 각종 제 증명서등을 예시사항을 들어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 살펴보았는 바, 가축 피  
해 농가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숙지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밝혀두고 싶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임상수의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환경분쟁피해보상에 따른 제반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여 숙지하여 나가지 않으면 아니된다.   